



호치민시한국교육원-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

업 무 협 약 서

호치민시한국교육원과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는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주관하고 호치민시한국교육원이 시행을 지원하는 베트남 내 한국어능력시험(TOPIK)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(목적) 본 협약은 베트남인과 베트남 내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유학 및 취업 등에 사용하는 한국어능력시험과 관련하여 시험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(시험의 종류 및 시기)

- ① 한국어능력시험은 TOPIK I, TOPIK II 로 나눠 시행한다.
- ② 매년 3 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, 시행 횟수와 시기의 선정 및 변경 등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③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일자 및 시간은 국립국제교육원이 정한다.

제 3 조(기본원칙)

- ① 양 기관은 협약에 명시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에 성실하게 협력한다.
- ②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.

제 4 조(시험의 개최 및 협력사항)

- ① 호치민시한국교육원
 1.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및 관리 기준 마련 및 제시
 2.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원서 교부, 접수 및 수납 관련 업무



3.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명단 및 시험 시행에 필요한 자료 인계
 4. 한국어능력시험 필요 경비 책정 및 지원
- ②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
1. 한국어능력시험 시험장 준비, 점검 및 관리
 2. 한국어능력시험 문답지 및 듣기 자료 보관 및 보안 관리
 3.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인력 확보 및 감독관 사전교육 실시
 4. 한국어능력시험 준비 및 결과에 따른 운영 관련 자료 보고
 5. 그 외 한국어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 준수

제 5 조(효력)

- ① 본 협약은 당사자 간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그 유효기간은 1 년으로 한다. 다만, 협약서의 기한 종료 6 개월 전에 일방의 당사자가 서면으로 종료할 의향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 본 협약서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.
- ② 제 1 항에 따른 협약 기간은 양 기관의 합의에 따라 종료일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- ③ 본 협약서의 수정은 양 기관의 협의 하에 결정하며 별도 서면으로 체결한다.
- ④ 본 협약은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작성되며, 각각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.



2022 년 9 월 28 일

호치민시한국교육원

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



원장
길호진

길호진

교장

손성호



손성호